

위 임계약서

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IPS(아이피에스)(이하"갑"이라 칭함)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-18번지에 소재하는 이영필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이영필(이하 "을"이라 칭함)과 1조에 정의하는 해외 특허출원 사건의 위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

제1조: 이 계약에서 사건이라함은 2000년 7월 22일 국내출원(출원번호 10-2000-42169)된 "클리닝 장치를 구비한 ALD 박막증착설비 및 그 클리닝방법"에 대응하는 해외 출원으로서 해당국가는 다음과 같다.

* 출원대상국: 미국, 일본, 유럽, 대만, 싱가폴 (5개국)



제2조: "갑"은 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국내외의 복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"을"에게 위임한다.

제3조: "을"은 본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사건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며 본 사건이 "갑"에게 적은 비용으로 유리하게 특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진다.

제4조: 1. 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"갑"은 국내대리인 "을"에게 해외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각 나라당 5,500,000 원씩 <u>총 27,500,000 원</u>을 지급하기로 하되, 계약금으로서 5,000,000 원을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하며, 갑이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(2000년 8월 일)까지 온라인으로 입금키로 한다. 잔금은 초안인도후 출원통보와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. 출원후 가감될 금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.

- 2. 각국 특허청에서의 실체심사와 관련하여 현지대리인이 중간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중에서 국내대리인이 현지대리인에게 협조하는 사항에 대한 대가는 현지대리인 발생비용의 30% 이내에서 "갑"이 부담한다.
- 3. "갑"은 본 사건이 각국에서 등록된 경우에는 "을"에게 등록수수료(미국: 1,300,000원, 기타 국가당 1,000,000원씩)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: 출원시, 심사진행시 및 등록시 해외에서 발생되는 현지대리인이 청구하는 비용은 "갑"이 그 실비용을 "을"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

제6조: 본 사건 진행중 중도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"갑"이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"갑"이 부담하여야 하나 의사 표시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"갑"이 부담하지 않는다.

WAS TO

제7조: "갑"은 국내 대리인 성사금에 대해서는 각국으로부터 등록통지서를 접수하여 "을"이이를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한다. 또한 중간사건비용에 대해서는 현지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가접수되어 "을"이 이를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한다.

제8조: "갑"은 "을"로부터 비용청구가 있으면 "을"의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청구된 금액을 3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여야 한다. 만약, 기한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"갑"이 본 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"을"은 더 이상의 사건진행을 중단한다.

제9조: "갑"은 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"을"로부터 자료의 제공 및 보완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: "갑"과 "을" 쌍방은 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전 각항의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.

본 약정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.

2000년 8월 16일

(갑) 위임자 주식회사 I P S 京農道 平澤市 芝制洞 33

대표이사 (株) 아이 피에

代表理事 李 鎔 漢 (을) 수임자 이영필합동특허법률사무소

대표변리사 이 영

- 계 약 서(案)



| 결 | 작 성 | 검 토 | 그룹장 | 임 원 | 사 장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TH | | | | | |

계약번호 : 제 00-002호

공급받는자 ㈜아이피에스 (이하 "갑"이라함)과 공급하는자 씨.에스.텍 (이하 "을"이라함)는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체결한다.

- 아 래 -

제 1 조 [목적물]

"갑"의 주문에 의하여 "을"이 가공 및 제작하여 "갑"에게 인도해야할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.

| 품명 및 규격 | 급 액 | 비고 | | | |
|--|-------------|--------|--|--|--|
| Stage Heater (Inconel Heater 8") (Client DWG : 1000044 Rev.0) | ₩16,000,000 | 견적서 참조 | | | |
| 첨부자료 (납품시): 검사성적서 ·제작성적서 | | | | | |
| 계약시 : 제작사양서 ·제작도면 ·친종견적서 | | | | | |

제 2 조 [계약금액]

- Nicht with Eigh price. Mr mind calus)

1) 총계약금액 : 일천육백만원 정 (V.A.T 별도)

2) पाना राष्ट्रिश्य : धार्मक खान व्या (first orders was ups and anknown)

제 3 조 [계약납기]

2000년 9월 12일

제 4 조 [계약내용변경]

"갑"은 "을"에게 제 1 조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시 수량의 증감 및 이에 따른 금액의 변동,

납기의 변동등을 납기 7일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"을"은 타당한 이유를 갑에게 제시하지 않을시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.

단, 이 사항 변경으로 야기되는 관련 조건의 조정이 불가피하면 "을"은 "갑"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"갑"의 합의하에 결정한다.

제 5 조 [지체배상금]

"을"은 납기내에 물품의 전량을 납품할 수 없을때는 사전에 "갑"에게 납기지연 승인을 서면상으로 신청하며, 이때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총 금액에 3/1000의 지체 배상금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.

(단,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인한것이라고 "갑"이 인정할때는 지체 배상금을 면제 할 수 있다.)

제 6 조 [검사 및 검수]

1)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한자는 제작 기간중 "을"의 제작 장소에서 동 물품의 제작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, "을" 은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한 자가 검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, 설명 등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 특정 부분의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"을"은 제작기간 중에 이러한 상황을 "갑"에게 통보하여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"갑"은 전항의 검사 결과 "갑"의 지시에 상이된 작업을 발견 할 경우에 그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시정, 지시할 수 있다.

2) 물품의 검수는 "갑"이 지정한 검수인이 "갑"의 지정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며, "갑"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"갑"이 지정하는 공공기간의 검사 시험표를 "을"이 "갑"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[해 제]

"갑"은 "을"에게 다음 경우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- (1) 물품내역이 계약 사항과 상이할 때
- (2) 납기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

H E

(3) 기타 "을"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

→ 8조 [하자보증]

- 1) "을"은 보증 기간중 계약 물품의 재질, 설계, 제작 또는 운반중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, 능률 저하등이 발생 할 경우는 "을"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대체 공급하여 "갑"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2) "을"이 납품한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"갑"이 입은 조업상의 손실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"갑"의 청구에 따라 "을"은 이를 "갑"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 9 조 [비밀보장]

"을"은 계약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"갑"으로부터 받은 기술정보, 제품의 사양 또는 "갑"의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취득한 "갑"의 사업계획 내용이 "을" 또는 그의 종업원에 의 하여 제 3 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"갑"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. 본 비밀보장 의무는 본 계약만료 또는 종료후 2 년간 존속한다.

灬 10 조 [기 타]

- 1) 만일 본 계약에 관련되어 소송이 필요할 경우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- 2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"갑", "을" 상호 협의하에 일반 상관례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한다.

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쌍방서명 날인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00 년 7월 27일

"갑":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번지

382-3 로즈플라자 빌딩 302 호 씨.에스.텍 (CS TECH Co.)

대 표곽병도

"을"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

㈜ 아 이 피 에 스

대표이사 이 용 한 김 태 수